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4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6월 22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대·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,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회 내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도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(안제3 조제3항 신설).
-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을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함(제13조 단서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③ 연구단체는 1개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. 다만,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다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1개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</p> <p>③ 연구단체는 1개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.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13조(존속기한)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. <단서 신설></p>	<p>제13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.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</p>